장애인 편의 · 건강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 · 건강지원]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편의지원과 건강지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 장애인자동차 지원, 대중교통 이용 보장,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각종 장애인 시설지원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및 급여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편의 · 건강지원 1
1. 장애인 편의 · 건강지원 개요 4
1.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4
1.1.1. 장애인의 개념 4
1.1.2. 장애인등록 8
1.1.3.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9
2. 이동 편의 지원 11
2.1. 교통편의 지원 11
2.1.1.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11
2.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5
2.1.3.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17
2.2.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18
2.2.1.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18
2.2.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19
2.3. 보행 편의지원 20
2.3.1. 활동지원급여 20
2.3.2. 장애인 보조견 지원 24
2.3.3. 보조기기의 지원 25
3. 장애인 시설 지원 35
3.1. 장애인 편의시설 35
3.1.1.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35
3.1.2.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7
4. 장애인 건강지원 40
4.1. 의료비에 대한 지원 40
4.1.1.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40
4.1.2. 의료비 지원 41
4.1.3.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43
4.2.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45
4.2.1.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45
4.2.2.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47

1. 장애인 편의 · 건강지원 개요

1.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1.1.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6	췌장장애인 (膵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 소개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개요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사용 허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대중교통의 이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행편의 지원	▪ 활동지원급여제도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장애인 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건강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 보험급여 지급 ▪ 의료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 그 밖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고용, 장애인 취업·창업 및 장애인 교육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고용
▪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장애인 취업·창업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개념 및 등록 ▪ 장애인 취업 ▪ 장애인 창업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1.1.2.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p.74].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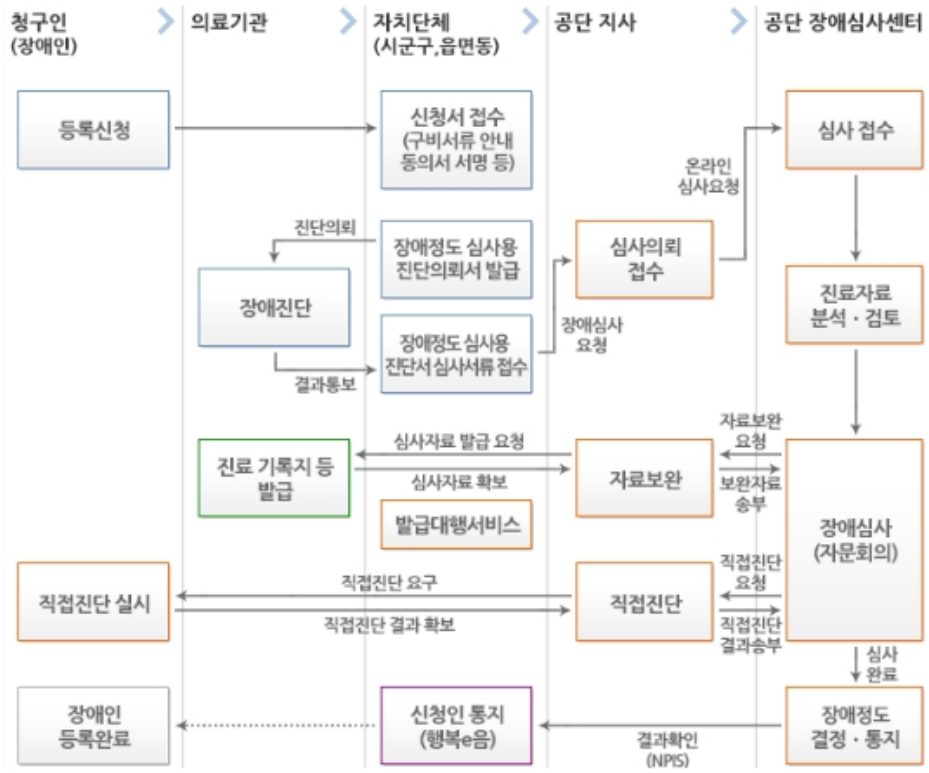
※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인등록 절차도

▪ 장애인등록 신청, 진단 및 심사 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장애인정책,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 정도의 확인과 장애인 등록

▪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 ※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정도심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의2).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정도 조정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 정도의 조정

▪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정도 조정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그 밖에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동 편의 지원

2.1. 교통편의 지원

2.1.1.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법률상 발급 근거가 구분되나, 하나의 표지에 겸용 표기되어 동시에 발급·관리되니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주의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45~246쪽 참조].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유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그 밖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32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18~219쪽].

주차장의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제1호나목). 다만,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수에 관한 설치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비율인 주차대수의 2%를 준용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상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18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법률상 발급 근거가 구분되나, 하나의 표지에 겸용 표기되어 동시에 발급되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주의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이동 편의 지원-교통 편의 지원-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

>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채권 조례> 참조).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65쪽 참조].

>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수수료 수수료 감면안내 참고].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2.2.1.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대중교통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②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③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참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함)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함)을 경영하는 사람(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2항).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 지정되어 있으며,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2.2.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제5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함) 100명당 1대

▸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69쪽 참조).

구 분	내 용
이용대상자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한정) 3. 1. 및 3.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한정)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보행 편의지원

2.3.1.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란?

▪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기타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및 절차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2권)』, 52쪽 참조).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

가. 종합점수

구 분	산출방법
성인(만19세 이상)	종합점수 = $(0.01225X_1 + 0.05583X_2 + CX_3) \times 30$
아동(만19세 미만)	종합점수 = $(0.01574X_1 + 0.05583X_2 + CX_3) \times 30$

1) X_1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1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2) X_2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2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3) X_3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3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4)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_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이다.

C 계수		0.0374	0.0415	0.0519	0.1038	0.1453	0.2075	0.2496
X_1영역 합산점수	성인	115~199점	200~254점	255~289점	290~359점	360~429점	430~499점	500점 이상
	아동	89~154점	155~197점	198~224점	225~279점	280~333점	334~387점	388점 이상

5)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다.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85,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49,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49,000원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또는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2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장애인 보조견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등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308~309쪽 참조).

구 분	내 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청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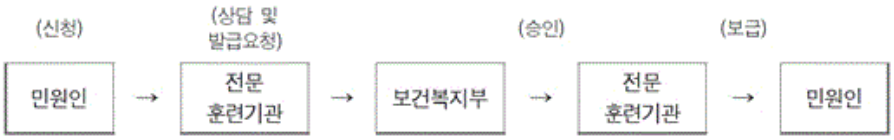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031-8008-6721
한국 장애인도우미견 협회	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031-691-7782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320-8928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절차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309쪽).



>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금지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제1항).

▪ 위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제2항).

2.3.3. 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76쪽 참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76쪽).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1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심장	35만원	3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옮겨앉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심장	38만원	3년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②이상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3 22 45 06)	시각	3만원	2년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교부					
4	음성시계 (3 22 28 03)	시각	5만원	2년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5	신호장치 (3 22 29 03)	청각	58만원	3년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성인] 위험인식 및 대처,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위험인지하기,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6	진동시계 (3 22 28 04)	청각	5만원	2년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7	롤레이터(보행차) (3 12 06 06)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8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지체, 뇌병변	37만원	5년		
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지체, 뇌병변	40만원	5년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3 12 06)인 7번 보행차, 8번 좌석형 보행차, 9번 탁자형 보행차는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여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식사하기 ②이상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성인] 음식물 넘기기, 식사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13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 파져있어 음식 담기가 편리함	
14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지체, 뇌병변	5만원	1년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 음식섭취 보조기기(10~14번 품목)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1 04 48 39)	지체, 뇌병변	170만원	3년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대상자 범위 제한 : 19세 이상					
16	소리증폭기 (3 22 06 06)	청각	80만원	3년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17	영상 확대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	270만원	4년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 2025. 1. 1.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18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3 22 13 18)	시각	80만원	5년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 2025. 1. 1.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19	목욕의자 (3 09 33 05)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성인] 목욕하기,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목욕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0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3 22 13 21)	시각	100만원	4년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21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지체, 뇌병변	53만원	8년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여부 확인 필요					
22	이동변기 (3 09 12 03)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성인] 배변, 배뇨,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35만원	4년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옮겨앉기 ②이상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24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3 09 03)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5만원	2년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의류	[성인] 옷 갈아입기, 실외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옷 갈아입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품목의 범위: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옷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5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0만원	2년	휠체어 사용자의 휠체어 사용 편의성 향상과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 장치를 보호	[성인] 실외이동 ③이상 또는 앉은자세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또는 옮겨앉기 ②이상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휠체어 캐노피),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 휠체어 액세서리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 2025. 1. 1.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성인] 앉은자세유지, 옮겨앉기, 배변, 배뇨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 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90)	지체, 뇌병변	40만원	3년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로 일상생활 지원	[성인] 실내이동, 실외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28	대화용장치 (3 22 21 09)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89만원	3년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성인] 전화사용 ②이상 [아동]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29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3 18 18)	지체, 뇌병변	20만원	5년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핸드레일 미해당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3 18 12 10)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20만원	10년	사용자나 보조인이 전동으로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구획으로 구성된 매트리스 지지단이 있는 침대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옮겨앉기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품목의 범위 : 의료기기에 한해 지급함(측면난간, 머리판, 발판 등 안전장치 필수)					
31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3 12 27 07)	지체, 뇌병변	150만원	5년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3 18 09 21)	지체, 뇌병변	130만원	3년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성인] 앉은 자세유지 항목 ②이상 [아동] 걷기와 식사하기 항목 ②이상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지체, 뇌병변	5만원	3년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34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20만원	3년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성인] 배뇨 ③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③이상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35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3 24 13 27)	뇌병변	16만원	3년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성인] 실외이동 항목 ③이상인 사람 [아동] 걷기 항목 ③이상인 사람
	※품목의 범위: 컴퓨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입력을 도와주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에 한함					
36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낙상알림기) (3 22 29 06)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93만원	5년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성인] 옮겨 앉기 2이상 또는 앉은 자세 유지 ②이상 또는 실내 이동 ②이상 [아동] 옮겨 앉기 ②이상 또는 걷기 ②이상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3 18 03 06)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100만원	3년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학습, 독서 및 기타활동 등의 접근성 제고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품목의 범위: 높낮이 조절 책상에 한함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22 28 12)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10만원	5년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복용 및 과다복용 예방	[성인] 약 챙겨먹기 ②이상 [아동] 본인물건 관리하기 ②이상
	※품목의 범위: 투약알림기에 한함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3 12 12 12)	지체, 뇌병변	240만원	3년	차량내 안전한 탑승과 자세 지원 및 사고 예방	[성인] 앉은자세 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 가능					

연번	품목명(품목코드)	장애 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기능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40	키보드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3 24 13 18)	시각	40만원	5년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기능 제어 등 사용 접근성 제고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상
41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3 22 13 15)	시각	85만원	3년	컴퓨터 화면내용의 음성출력 기능을 통해 정보접근 향상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상
	※품목의 범위: 소프트웨어에 한함					
42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영상전화기) (3 22 24 04)	청각	120만원	4년	영상을 통한 수어, 손말이음센터 연결 등 지원	[성인] 전화사용 ②에 해당하는 사람
43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3 24 18 27)	지체, 뇌병변	290만원	5년	컴퓨터 활동 및 식사 활동 등 수동 활동 동안 아래팔을 지지	[성인] 식사하기 ②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품목의 범위: 책상 고정형에 한함					
44	전동칫솔 (3 09 42 06)	지체, 뇌병변	35만원	2년	구강 세척 후 세척물을 흡입하여 구강관리를 지원	[성인] 구강청결 ②이상 [아동] 구강청결 ②이상
	※품목의 범위: 세척물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202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참조).

※등록 장애인의 가족, 친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을 제출해야 하나, 등록 장애인과 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는 위임장 불필요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87~490쪽 참조].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시장 등은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 후 14일 이내에 교부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90쪽].

의뢰서를 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기기업체는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90쪽].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76쪽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시설 지원

3.1. 장애인 편의시설

3.1.1.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용품 비치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함. 이하 같음)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치용품의 이용료

▪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시설이용시 편의제공 요청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은 아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①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③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1.2.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쉼터, ⑥ 피해장애아동 쉼터, ⑦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구 분	시설의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쉼터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신청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복지시설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검색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 참조).

대상시설

▪ 실비입소 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 참조).

▹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절차는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에 따릅니다.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료 지원사업 대상인 해당 시도는 관할 실비시설에 대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예산"을 보장시설에 준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원합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 참조].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건강지원

4.1. 의료비에 대한 지원

4.1.1.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의 경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별표 2).

장애정도	적용요건		경감적용 비율
	소득월액	과표재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534쪽 참조].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 ※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자

▪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41쪽].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중증장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경증장애인'은 지원 가능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중증질환자·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및 잔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장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지원 가능

▪ 장애인이 지급받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41쪽].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의료비 지원신청

▪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위의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그 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3.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7쪽).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7쪽).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임신기간 4개월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5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및 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8쪽).

▪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출산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장애인인지원 사업안내』,89쪽 참조).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포함)
-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단,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7쪽 이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167].

구분		내 용
지원 기준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4만원 √ 그 밖의 장애: 1만 5천원
지원 방법	의료기관 청구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진단비용을 청구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재판정 검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은 아래의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에 따라 지급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167].

구 분	검사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2. 의무재판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3. 서비스재판정	
4. 직권재판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5. 조정재판정·이의	▪ 해당 없음

※ 위의 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을 포함합니다.

4.2.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4.2.1.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3호 본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항).

구 분	공단의 부담금액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신청방법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제출 서류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 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 표 7 제1호나목 전단)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 및 통보) ⇩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 식)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

▪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공단 부담금액의 지급

▪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 장애인 보장기기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76~49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보행차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위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신청방법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보조기기 처방전[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몸통지지보행차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시·군·구의 급여여부 통보)

↓

-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다만,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한 사람이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본문).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보조기기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기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